



County of San Diego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PUBLIC HEALTH SERVICES

보건 담당관의 제한적 명령

(2021년 6월 15일부터 유효)

2021년 6월 15일자로,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이 폐지됩니다. 개인 및 단체는 안면 가리개, 학교 기반 지침 및 메가 이벤트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 Cal OSHA 및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의 제한적 지침 및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담당관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유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Order-of-the-State-Public-Health-Officer-Beyond-Blueprint.aspx>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담당관은 또한 2021년 6월 15일부터 유효한 업데이트된 안면 가리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안면 가리개 지침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aspx#June15guidance>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거나, 코로나 19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19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격리”라는 제목의 보건 담당관의 명령 또는 후속 수정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19에 걸렸거나 코로나 19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은 “코로나 19에 노출된 사람의 검역”이라는 제목의 보건 담당관의 명령 또는 후속 수정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두 명령 모두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health-order.html.

코로나 19 유행병과 관련된 후속 보건 담당관의 명령은 샌디에고 카운티의 조건에 따라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 법령 섹션 101040, 120175 및 120175.5 (b)에 따라,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 담당관 (보건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 2021년 6월 15일부터, 2021년 5월 6일자 보건 담당관의 명령 및 비상 규정, 그리고 코로나 19와 관련된 기타 보건 담당관의 명령은 다음을 제외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됩니다:

- a. 2020년 12월 24일자 “코로나 19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격리.”
 - b. 2021년 4월 5일자 “코로나 19에 노출된 사람의 검역.”
 - c. 현재 유효한 개인에게 내려진 검역 또는 격리 명령.
2. 보건안전 법령 섹션 120175.5 (b)에 따라, 카운티의 모든 정부 기관은 주 및 지역의 법률, 규정 및 코로나 19 통제 관련 명령을 준수하도록 정부 기관의 통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합니다.

이에 명령합니다:

날짜: 2021년 6월 14일

Wilma J. Wooten, M.D., M.P.H.
공중 보건 담당관
샌디에고 카운티

비상 규정의
유효 기간 만료

샌디에고 카운티의 비상서비스국의 국장으로서, 본인은 정부법령 섹션 8634 및 샌디에고 카운티 규약 섹션 31.103에 따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6일자 보건 담당관 명령 및 비상 규정은 2021년 6월 15일자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그 유효 기간이 종료됩니다.

날짜: 2021년 6월 14일

Helen Robbins-Meyer
최고 행정 책임자
비상서비스국 국장
샌디에고 카운티